

공정경쟁정책

■ 목적

본 규정은 클래시스(이하 “회사”)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파트너사와의 공정한 거래 및 독점방지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본 정책은 클래시스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클래시스는 협력사 및 그 임직원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원칙

1. 임직원은 공정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본 정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사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 관련 법령, 사규의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경영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사규를 위반한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 행정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5. 임직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실태조사 등 관계기관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방해행위(정보 삭제, 수정 및 파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영관리본부에 해당 자료를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경영관리본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위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 ① 회사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법인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자금, 자산, 상품 및 인력지원을 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회사는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회사는 특수관계인 중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 (이하 “동일인 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동일인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급업체 등과의 거래시 준수사항

- ① 회사의 임직원은 파트너사, 기타 상품·용역 관련 공급업체 등 비경쟁업체들(이하 “공급업체 등”이라고 한다)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는 경영관리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공급업체 등이 다른 고객들과 사업을 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2. 공급업체 등이 다른 경쟁업체들과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거나, 요구에 불응 또는 경쟁업체와 거래할 경우, 해당 공급업체 등과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3. 공급업체 등에게 다른 고객들의 기밀 또는 경쟁 관련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4. 회사가 공급업체 등으로부터 하나의 상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을 구입함에 동의하는 행위

■ 경쟁업체와의 부적절한 교류 금지

- ① 회사의 임직원은 경쟁업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격 등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쟁업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쟁업체와의 모임에 참석할 경우 해당 모임의 성격 또는 주제를 확인하여, 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영관리본부에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예정된 주제와 달리 모임에서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대화가 시작되는 경우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주최측에 반대의사를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하며, 즉시 경영관리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경쟁업체가 본 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제안하는 경우,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기록(이메일, 팩스 등)으로 남겨두며, 즉시 경영관리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경쟁업체와 합작벤처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합작벤처와 관련하여 경쟁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은 합작벤처의 사업과 관련한 주제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2. 관련 정보는 합작벤처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만 제공되어야 하며, 충분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금지

① 회사가 지배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에서 임직원들은 경쟁에 유해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 등을 방해하거나 기타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중단, 제한하는 행위

4.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 하도급법 준수사항

회사의 임직원은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면약정 없는 구두 발주 및 선 발주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중요한 거래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2. 거래상대방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변경하거나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목적물등을 반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4. 그 밖에 하도급법 및 그 하위법령, 계약, 업무지침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